# 「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8. 3. 1. 개정 판 (시행 2008. 3. 1.) → 2015. 2. 16. 개정 판 (시행 2015. 3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192/compare?from=481&to=483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18:19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3조(지원내용)**<br>①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,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<br>1.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<br>2.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<br>3. 단순참가 실비<br>4. 학술대회 참가실비<br>②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,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. 단,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(원)의 대학(원)생, 등록된 박사후연구생,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.<br>1.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.<br>2. 국외발표의 경우<br>(1)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.<br>(2) 1년 100만원(연 2회 제한)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,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.<br>3.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.<br>4.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. | **제3조(지원내용)**<br>① 학술 대회 단순참가의 경우는 1인당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, 단순참가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<br>1. 국내외 학회비 및 년회비<br>2. 국내외 학술대회 등록비<br>3. 단순참가 실비<br>4. 학술대회 참가실비<br>② 논문발표의 경우는 주발표자 1인에게만 다음과 같이 지원하며, 공동연구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. 단, 주발표자가 본 대학교 대학(원)의 대학(원)생, 등록된 박사후연구생, 등록된 소속연구원인 경우에는 부 발표자로 등록된 지도교수 1인에게 지원한다.<br>1. 국내발표의 경우 발표지원금 편당 20만원을 지원한다.<br>2. 국외발표의 경우<br>(1) 발표지원금 편당 30만원을 지원한다.<br>(2) 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항공료, 체재비 및 등록비를 지원한다. 단,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-02-16〉<br>3. 연구교수의 발표는 전임교원과 공동발표를 하여야 하며 연구교수가 주발표자일 경우에 한하여 전임교원에 준하여 지원한다.<br>4. 동일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편수에 관계없이 발표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. |
| **제4조(의무사항)**<br>①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.<br>②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. | **제4조(의무사항)**<br>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.<br>② 강의와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. |
| **제5조(신청시기)**<br>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진흥실로 제출한다. | **제5조(신청시기)**<br>학술대회 개최일 15일전까지 교무처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은 사후에 소정의 양식을 연구처로 제출한다. |
| **제7조(결과보고)**<br>①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.<br>②논문발표의 경우,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진흥실에 제출한다. | **제7조(결과보고)**<br>① 단순참가의 경우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.<br>② 논문발표의 경우, 증빙서류와 연구지원시스템의 국내외학술대회참가지원서를 연구처에 제출한다. |

## 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### 「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①학술"을 "① 학술"로 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"②논문발표"를 각각 "② 논문발표"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"1년 100만원(연 2회 제한) 한도"를 "년 200만원 한도"로 하고, "등록비를 지원한다."를 "등록비를 지원한다. 단, 동남아 국가는 1회에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-02-16〉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①안식일"을 "① 안식일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②강의와"를 "② 강의와"로 한다.

제5조 중 "연구진흥실로"를 "연구처로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①단순참가"를 "① 단순참가"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"연구진흥실"을 각각 "연구처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